



과세가격 미리 확인받으세요

III 관세평가

- 관세평가란 '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,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'을 말합니다.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격과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III 과세가격 결정방법

-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"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."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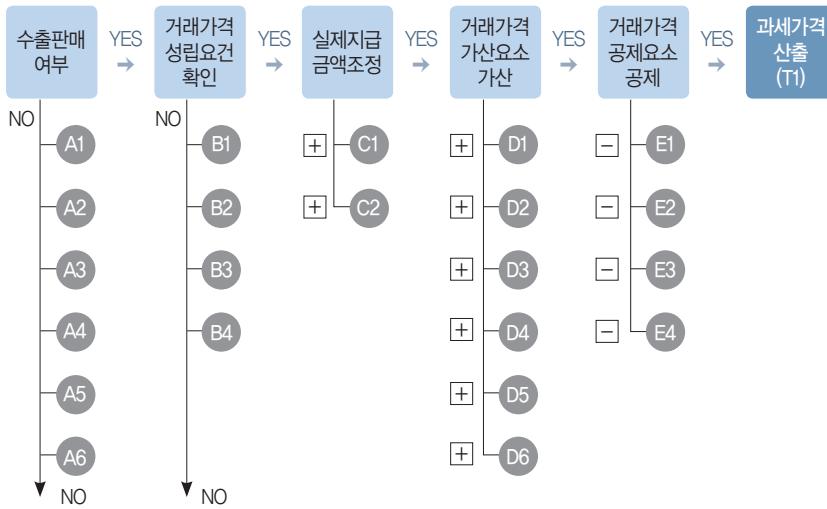
거래가격 가산요소

- 수수료 및 중개료 (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)
- 용기비용, 포장소요비용
-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
- 권리사용료 (Royalty) (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)
- 사후귀속이익
- 운임 및 보험료

-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동종·동질물품의 거래가격(제2방법), 유사물품의 거래가격(제3방법), 국내판매가격(제4방법), 산정가격(제5방법)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,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(제6방법)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.

(다만,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제4방법, 제5방법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)

과세가격 결정방법 체계도



T1 : 실제지급금액을 기초한 과세가격
T2 : 동종 ·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
T3 :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
T4 :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
T5 :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
T6 : 합리적인 과세가격

C1 : 별도로 지급한 금액
(채무변제액, 상계액)
C2 : 간접지급금액

A1 : 무상 수입물품이 아님
A2 : 판매위탁 수입물품이 아님
A3 : 수출자 책임판매물품이 아님
A4 :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님
A5 : 유 · 무상 임대차물품이 아님
A6 : 송화주 부담 파기물품이 아님

D1 : 수수료 및 증개료
D2 : 용기 및 포장비용
D3 : 생산지원비용
D4 :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
D5 : 사후귀속이익
D6 : 운임 및 보험료

B1 : 수입물품의 사용 · 처분의 제한 없음
B2 : 특별한 조건 · 사정으로 가격에 영향 없음
B3 :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없음
B4 :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E1 : 수입후 설치 등 비용
E2 :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
E3 : 수입국 제세 · 공과금
E4 : 연불이자

■■■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활용하세요.

- ▶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'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'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(일반 사전심사; APR: Advance Pricing Rule)와 본·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(특수관계 사전심사; ACVA ;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)로 구분됩니다.

【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비교】

구 분	일반 사전심사(APR)	특수관계 사전심사(ACVA)
심사대상	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	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
심사기간	30일	1년
시행시기	1990. 12. 31	2008. 1. 1
신청자격	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	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·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* 1회성 수입물품은 APR로 신청
심사절차	일방 결정	납세자 협의 → 동의 → 승인
심사담당	관세평가분류원	관세평가분류원(본부세관)
주요 심사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·공제요소 확인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(조건이나 사정, 처분이나 사용 제한, 사후 귀속이익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(제1방법~제6방법)의 적용 가능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
잠정신고	적용대상 아님	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, 승인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
가산세	일반 수입물품과 동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~승인기간 가산세 면제 승인내역으로 신청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10% 면제
유효기간	3년 (확인물품에 한함)	3년 (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)
사후관리	해당없음	연례보고서 제출
법적근거	관세법 제37조제1항제1, 2호	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